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1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68,233,80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27. 68,233,800원의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5. 2. 2. 69,461,62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원인 및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2015. 2. 2.자 69,461,62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원고가 비록 청구취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69,461,62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1.부터 2014. 2. 11.까지 B 외 5대의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각 작업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50,860,710원 전액을 감면신청 하여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가 대표이사인 C의 개인 기업에 대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4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8,233,800원의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작업차의 취득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 69,461,620원(본세 50,860,710원, 가산세 18,600,9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의 개인기업인 'A'와 원고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개인사업자 C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자인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된 것은 창업에 대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작업차에 대한 등록 서류 등을 검토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납부액이 0원으로 명시된 납부 고지서를 2년 동안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원고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면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1. 5. 25. 'A'라는 상호로 일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12. 11. 26.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도로화물 운송업 등을 업으로 하고 있다.

② 현재 C의 개인사업장 'A' 소재지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redacted]시 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D, 101호로 동일하고, 개인사업장 직원과 원고 직원이 사무실, 직원 휴게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간판 명칭은 '(주)A'라고만 되어 있다.

③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4. 11. 17. 현재 C이 원고의 주식 60%를, C의 부(父)인 소외 E이 40%를 각 보유하고 있다.

④ C의 개인기업 'A'의 매출처는 원고의 매출처와 50% 이상 동일하다. C의 개인기업 'A'의 2013년 1기(원고가 설립된 직후이다) 매출총액은 2012년 2기 매출총액에 비하여 급감하였다.

⑤ 원고는 인터넷(주식회사 '사람인'의 기업정보란)에 원고의 설립일을 개인기업의 설립일인 2011. 5. 25.로 표기하고, 직원 수와 사업규모도 원고와 C의 개인기업 'A'의의 규모를 합하여 표기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감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신고한 것을 담당자가 일단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을 수리하는 사실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그것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이 사건 각 작업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작업차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작업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취득세가 감면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창업임을 주장하면서 감면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통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형

판사 강미희

판사 조용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8

별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끝.